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2018. 12. 14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: 2018년 11월 21일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2018년 12월 3일

(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
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
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나. 주요내용

- 1) 적용범위(안 제2조)
- 2)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- 3) 취업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4조)
- 4) 취업지원센터의 조직(안 제5조)
- 5) 취업지원센터의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 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

- 본 조례안은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7조의3에 시·도교육감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2018. 3. 27.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안 제3조에 교육감이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취업지원센터의 수행 사업과 인력배치 등 취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명시함으로써,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-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이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고,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조문 체계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,
-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충청북도 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취업역량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되는 바,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
2. 특성화고등학교

제3조(취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」(이하 “취업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.

제4조(취업지원센터의 기능)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
2.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
3.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
4.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
5.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
6.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5조(취업지원센터의 조직)**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-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장학관이 겸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, 산학협동 지원, 노동인권교육 지원, 취업정보 서비스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(교육전문직원, 교사, 행정직원 등)을 배치할 수 있다.
-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,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취업지원센터의 지원)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직업교육훈련촉진법[시행 2018.9.28.] [법률 제15525호, 2018.3.27., 일부개정]

제7조의 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

-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·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고용정책 기본법 [시행 2018. 9. 21.] [법률 제15522호, 2018. 3. 20., 타법개정]

제24조(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) 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·조언하고,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,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관련: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
-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활성화,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필요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인건비(행정직원 2명, 교육전문직 1명), 취업지원센터 운영비

3. 관련조문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5조(센터의 조직)

-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(교육전문직원, 교사, 행정직원 등)을 배치할 수 있다.
-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,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센터의 지원)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건비: 2018.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건비 단가 적용
 - ※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인건비 인상분
(보수인상분 및 호봉승급분을 포함 5.33%)

- 운영비: 2018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비 적용

※ 연도별 물가상승률 3% 반영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간 인건비 추계		연도별 인건비 추계					
산출기초	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1. 인건비	217,253	217,253	228,833	241,030	253,877	267,408	1,208,401
가. 행정직원 60,568,940원×2명=	121,137	121,137	127,594	134,395	141,558	149,103	673,787
나. 교육전문직원 96,116,304원×1명=	96,116	96,116	101,239	106,635	112,319	118,305	534,614
2. 운영비	160,000	160,000	164,800	169,744	174,836	180,081	849,461
가. 센터 운영비 160,000,000원×1년=	160,000	160,000	164,800	169,744	174,836	180,081	849,461

다. 채용조달방안: 보통교부금, 특별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	
세 입	377,253	393,633	410,774	428,713	447,489	2,057,862	
보통교부금	277,253	293,633	310,774	328,713	347,489	1,557,862	
특별교부금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	
세 출	377,253	393,633	410,774	428,713	447,489	2,057,862	
인건비	217,253	228,833	241,030	253,877	267,408	1,208,401	
운영비	160,000	164,800	169,744	174,836	180,081	849,461	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국고보조금						
	보통교부금	277,253	293,633	310,774	328,713	347,489	1,557,862
	특별교부금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자체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